

危險管理와 HPR

I. 개요

미국의 손실방지에 관한 제 기준 및 대책은 보험회사의 엔지니어링 업무인 보험인수물건에 대한 위험관리활동을 토대로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보험회사의 역할은 계속될 전망이며, 이러한 특징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험회사가 위험관리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은 우리와는 다른 역사적·사회적 배경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손해율 감소를 통한 자사의 이익 확대화와 각 보험사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자유경쟁 원리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위험관리 기능과 관련, 미국내에서 제도화·상품화된 것이 HPR보험제도이다. HPR보험은 양질의 물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아주 낮은 보험요율로 고액의 물건을 인수하고, 또한 부가적으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서비스(Risk Control Service)를 제공하는 독특한 미국의 보험제도이다. 현재 미국내 주요 기업물건의 대부분(약 12만건)은 HPR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특정할인제도나 우리나라의 우량물건 할인제도를 HPR제도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HPR과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상이점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HPR의 경우 보험회사는 대규모 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 담보력을 갖추어야 하고, 대상물건의 위험상황에 따라 언더라이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우수한 방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HPR물건에 대한 보험인수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특정할인제도 등

은 인수회사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보험요율측면에서 보면 HPR의 경우 평균 보험요율 대비 약 80%정도 인하율이 적용되나, 특정할인제도 등은 평균 10~20% 할인율이 적용된다.

셋째, 보험인수시 대상 위험에 따라 소손해 면책범위(deductible) 설정을 HPR에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나, 특정할인제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넷째, HPR의 경우 인수물건에 대한 손실예방을 위해 보험회사의 적극적 위험관리 서비스 지원이 대상물건의 설립과정부터 준공후 증·개축 시설 변경 등과 같은 전과정에 적용되며, 계약물건의 농·동작 수검의무를 요하나, 특정할인제도 등에는 요율산정에 필요한 조사만이 인정된다는 점을 비교해 볼 때, 본질적인 상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I. HPR제도

1. HPR 역사와 특징

미국의 Massachusetts Norwood에 본부를 두고 Rhode Island 180만평 부지에 24개 시험소동 세계 최대규모의 시험센터를 보유한 FMS(Factory Mutual System) 전신인 Manufacturer's Mutual Fire Insurance Company를 1835년 Zachariah Allen이 설립하여 양호한 소방시설을 갖춘 물건에 대해 인수를 시작한 FMS의 언더라이팅 체계가 HPR보험의 창시이다. 설립당시 FMS에서 인수하는 보험을 특별히 HPR보험이라 하였고, 우수한 방재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방재에 관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물건에 한하여 HPR보험으로 인수하였다.

양호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이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이나 빌딩 등의 우량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이나 빌딩 등의 우량물건을 HPR 물건이라 하고 이러한 물건을 인수하는 보험을 HPR 보험이라고 통상 정의한다.

HPR의 의미는 언더라이팅과 위험관리의 결합으로써 이들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HPR 보험은 위험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물건만 인수한다.

HPR 보험의 특징은 통상의 보험요율보다 보험요율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방재전문 기술자가 정기적으로 이들 물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여 전반적인 방재설비의 시설 상태를 조사한 후 손해방지 및 경감에 대해 서비스를 계약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2. HPR 물건 요건

모든 물건이 HPR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수보험사가 정하는 자격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어떤 하나의 조건에 미달되어도 HPR물건으로 보호할 수 없다. 인수회사별로 자격조건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자동 소화설비설치와 소화전 병설 및 자위소방대 조작
- ◎ 양호한 건축구조 및 불연 내장재 사용, 적정 방화구획 설치
- ◎ 동일 계약자 점유 관리하에 있는 건물
- ◎ 위험공정, 위험물 취급소 및 저장소에 대한 방호대책 수립
- ◎ 양호한 방재시설 관리와 위험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적극적 참여
- ◎ 소정의 점검양식에 따라 정기적인 방재시설 시험과 외관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 유지 및 인수회사의 손실예방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 ◎ 적정 경비시스템 구축
- ◎ 연소위험을 비롯한 각종 위험에 대한 대책수립
- ◎ 일정 규모 이상(FMS 200~300만불)의 물건
- ◎ 소화설비의 변경·제조, 건물 신·증축, 공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HPR 엔지니어에게 관계자료를 제출 및 사전 승인 요함

◎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물건에 한하여 HPR물건 자격을 부여한다.

3. HPR 인수회사

미국내에서 HPR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우수한 방재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인수물건의 다양한 위험실태에 따라 적절한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규모 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력을 갖추어 주정부로부터 사전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내 4000여개 보험회사 중 HPR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 회사는 수개사에 불과하며, 주된 회사로는 FMS, IRI(Industrial Risk Insurers) 와 Kemper Group이 있다.

수입보험료 기수실적으로 보면 HPR 물건중 50%를 FMS에서, 30%를 IRI에서, 10%를 Kemper Group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HPR 요율의 변천

HPR보험의 평균 보험요율은 1835년 초창기에는 보험금액 100불당 84센트로, 그 당시 일반화재보험 요율의 약 절반정도 수준이었다. 1875년 무렵에는 100불당 30센트, 1910년 경에는 100불당 10센트, 1935년 이후 오늘날까지 100불당 3센트정도이며, 미국에 있어서 HPR을 적용받는 물건의 현재 화재보험 평균요율은 기업물건 평균 화재보험요율의 20%정도이다.

이러한 요율인하가 가능하였던 것은 스프링클러설비를 비롯한 자동식 소화설비 기술의 발전과 손실예방 및 손실규모를 줄이기 위한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서비스 및 계약자들의 자체위험관리 활동 증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 HPR에서의 위험관리 역할

HPR제도는 극히 낮은 보험요율로 물건을 인수하는 위험재무(Risk Financing) 기능과 인수물건의

손해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위험통제(Risk Control) 기능의 조합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분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활동이 HPR제도의 핵심사항이며, 심지어는 HPR물건의 인수여부, 요율결정 및 재보험 청구 등을 수행하는 언더라이터 조차도 위험관리업무 경험에 있는 엔지니어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FMS, IRI의 경우 전체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HPR보험의 구성요건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만이 HPR보험을 취급할 수가 있는 것이다.

HPR제도로 인한 과금 효과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 ◎ HPR물건 자격요건을 위한 기업체의 자체 활동
- ◎ 보험요율의 인하
- ◎ 고객에 대한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

이 세 가지는 상호 의존하는 함수관계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손해발생율 및 피해규모가 줄어들어 더욱 보험요율이 인하되고, 자발적 참여기업이 증가함으로써 국가 전체로 볼땐, 재해로 인한 손실이 줄어드는 역할을 하게된다.

III. 보험환경 변화에 따른 전망과 대책

1. 당면 현황과 전망

인도별로 단계적인 보험요율 자유화와 보험시장 개방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국내 보험사의 기준과 같은 영업위주 정책을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 정책으로 변경시키기란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지배적이다.

그동안의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및 위험관리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선 각계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지적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상 물건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위험평가의 균란으로 실력있는 언더라이팅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과 경영진의 관심 및 인력 지원 미비로 초보적 수준의 위험관리 활동을 담보하

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물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요도시의 중·대형 건물은 건물의 구조면이나 시설 관리면에서 HPR물건의 자격조건을 상당히 갖추고 있고, 공장 물건도 그동안 정부의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으로 대부분이 중·대형 물건으로써 각 기업마다 손실예방을 위한 부서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험요율도 외국에 비해 경직성 고요율체계 이므로 외국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구매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시장 개방으로 해외 보험사가 국내사와 동일한 경쟁을 할 때 HPR제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는 국내 보험사보다 낮은 보험요율 및 양질의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보험사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원칙에서 본다면 필연적인 사실이다.

2. 손해보험 분야에서의 대책

해외 보험사들과의 경쟁에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물건에 대해서는 각 사별로 자유경쟁을 하되, 대형물건에 대해서는 언더라이팅 및 위험관리활동을 각 사별로 수행하기 보다는 FMS, IRI와 같은 기술 풀(pool)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손해예방에 대한 점검과 연구기능을 갖추고 있는 전문화된 하나의 독립적 종합기관을 통한 기술 풀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당국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보험환경 및 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보험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그동안의 영업주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양질의 물건을 낮은 요율로 인수하고 인수한 물건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지원 강화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손실예방 및 손실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보험회사 수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모든 조직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에서 일선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이 필요할 것이다. ◉